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11. 20.

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총무과)
- 제출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1. 20.)

### 2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행정절차법」 및 「국민 제안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8조)
- 우수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1조)
-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3조)

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, 「국민 제안 규정」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
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(2023. 10. 4. ~ 10. 24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 · 규칙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행정절차법」 및 「국민 제안 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제안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,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를 현행에 맞도록 전부개정하여 주민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, 상위법령과의 연계성, 조례의 체계,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를 현행에 맞도록 전부개정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## 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